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95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김태호ㆍ이인선ㆍ엄태영

박충권 · 강명구 · 서천호

김성원 · 김종양 · 주호영

진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,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,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35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4조의35(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「국군조 직법」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군부대"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2030 년 12월 31일까지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대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4조의35(군부대 급식용역에
	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
	「국군조직법」에 따라 설치된
	부대 또는 기관(이하 이 조에
	서 "군부대"라 한다) 중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에 위탁
	급식의 방법으로 2030년 12월
	31일까지 직접 공급하는 음식
	용역의 대가 중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30
	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
	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
	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
	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	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
	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
	<u>야 한다.</u>